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신고포상금제(2004.1.1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제정·시행)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일부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환경부『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우리군 조례도 이 규정에 의거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의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과태료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주민신고 건에 대하여 항상 1차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공무원 적발시와 동일하게 1차에서 3차까지 차등 부과코자,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규정을 삭제코자 함(안 제8조제1항 삭제)

나.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포상금 지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현행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월평균금액 산정기준도 군단위에서 전국단위로 변경 조정코자 함(안 제15조제1항제3호)

다.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 과태료 10~300만원을 5~100만원으로, 신고포상금 3~30만원을 2~15만원으로 하향 조정코자 함(안 별표1)

3. 개정안 : 붙 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나.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다. 예산상황 : 해당없음

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호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중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월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함)"로 한다.
"별표 1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③ (생략)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 삭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제고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생 략) 2.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X297mm)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생 략)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현행과 같음)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 ---------- ---------- ---------- ---------- ---------- ---------- 3. (현행과 같음)	상위법령 개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 7 (생 략)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월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함) 4 ~ 7 (현행과 같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포상금 지급 기회 확대

(별표 1)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첨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나.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5
다.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라.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2
2.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가.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나.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5
다.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3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15
4.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15
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5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2
6.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가.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10
나.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5	10	30	2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10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	10	30	2
8.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10